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52 발의연월일: 2021. 4. 22.

발 의 자:추경호·구자근·김희곤

성일종 · 김영식 · 류성걸

유재옥 • 이만희 • 박완수

김석기 · 김정재 · 정점식

이헌승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외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,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 대로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영역이 '두뇌'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커지면서 기 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.

최근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40%로 확대하고, EU는 6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임.

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약 60% 에 이르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약 3%에 불 과함.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.

이에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5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5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5(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의 연구개발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 -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도체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제24조"를 각각 "제12조의5제2항, 제24조"로 한다.

제144조제1항 중 "제13조의2"를 "제12조의5, 제13조의2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3조의3"을 "제12조의5, 제13조의3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
적용례) ① 제12조의5 및 제127조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
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2조의5(반도체 연구개발 및
	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
	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반도체의 연구개발에 비용을
	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
	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
	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
	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
	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	<u>한다.</u>
	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반도체 시설에 투자한 경
	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
	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
	업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
	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
	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
	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·인력
	개발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
	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	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

제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 ① 내 7 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,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 제3항,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, 제26조와 제29조의5,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수있다.
- ③ ~ ⑩ (생 략)
- 제144조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
 - ① 제7조의2, 제7조의4, 제8조의3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12조의3, 제12조의4, 제13조의2,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
<u>다.</u>
제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 ①
제12조의5제2항, 제24조
1. ~ 3. (현행과 같음)
(2)

레19코이트레9칭 - 레94코
<u>제12조의5제2항, 제24조</u>
③ ~ ⑩ (현행과 같음)
제144조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
①
제12조의

제13조의3. 제19조제1항. 제24 조, 제25조의6, 제26조, 제29조 의2부터 제29조의5까지, 제29조 의7,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 까지, 제96조의3, 제99조의12, 제104조의8, 제104조의14, 제10 4조의15, 제104조의22, 제104조 의25, 제104조의30, 제122조의4 제1항, 제126조의6,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 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 조제2항, 제12조의3, 제12조의4 (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 당한다)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 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 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 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[사업소득(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

<u>5, 제13소의2</u>

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)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]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, 제7조의4, 제8조의3 제3항, 제10조, 제12조제2항, 제 12조의3, 제12조의4, 제13조의3, 제19조제1항, 제24조, 제25조의 6, 제26조,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, 제29조의7,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, 제96조 의3, 제99조의12, 제104조의8, 제104조의14, 제104조의15, 제1 04조의25, 제104조의30, 제122 조의4제1항, 제126조의6, 제126 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(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)에 따라 공 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 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

②
<u>제12</u>
조의5, 제13조의3

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	
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	
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